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심발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섬 발전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025호, 2022. 11. 15.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이용 기준(안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의 종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선박 운영 방법 등(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4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이하 “행정선”이라고 한다)을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선의 종류
2. 행정선 운항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 등이 행정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선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탑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 안전장비의 비치,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교통편의 증진 지원)</u> <u>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용하는 선박(이하 “행정선”이라고 한다)을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 <u>1. 행정선의 종류</u> <u>2. 행정선 운항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u> <u>3. 주민 등이 행정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시장·군수·행정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을 위탁할</u>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1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선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탑승객에 대한 안전 교육, 안전 장비의 비치,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	
연 락 처	(044) 205 - 3521